

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내부위원회

'96. 4. 23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6년 4월13일 이천시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1996년 4월19일 내부위원회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3회 이천시의회(임시회)
제1차 내부위원회(1996. 4.22)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총무국장 한기영)

가. 제안이유

- 면·동간 경계조정으로 대월면 초지출장소가 폐지됨에 따라 출장소 정원을 시본청과 읍·면·동에 상계조정 하려는 것임.
- 소방서 관할구역 조정에 따른 기능직공무원(소방차량운전원)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시본청 및 읍·면·동에 두는 정원총수를 개정함(안 제2조 제1호 및 제5호)
 - 시본청 319명 → 325명(증 6명)
 - 읍면동 319명 → 309명(감 10명)
- ※ 소방서로 기능10등급(운전4명 정원이체), 신둔면 △1명, 백사면 △1명, 마장면 △1명, 설성면 △1명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안봉환)

본 개정조례안은 면·동간의 명칭변경 및 구역조정으로 이천시 대월면 초지출장소가 폐지됨에 따라 출장소 정원 6명을 시 본청으로 상계조정함에 따라 종전 시본청 정원 "319명"을 "325명"으로 조정 개정하려는 사항이며.

소방서 관할구역 조정에 따른 기능직공무원(소방차량 운전원) 정원이체 및 신분전환 정원보강에 대한 인력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거 지방12200~130('96. 1.18)호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읍·면 소방차량운전원(기능 10등급)4명을 소방서로 정원이체등에 따라 총전 읍·면·동 정원 "319명"에서 "309명"으로 조정 등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른 요 지 : 생 략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기타필요한 사항 : 없 음